위치정보법 개정안 주요내용

2016. 11.



Contents

Ⅱ 개정 목적

Ⅲ 개정 주요내용

Ⅲ 향후 계획





I. 개정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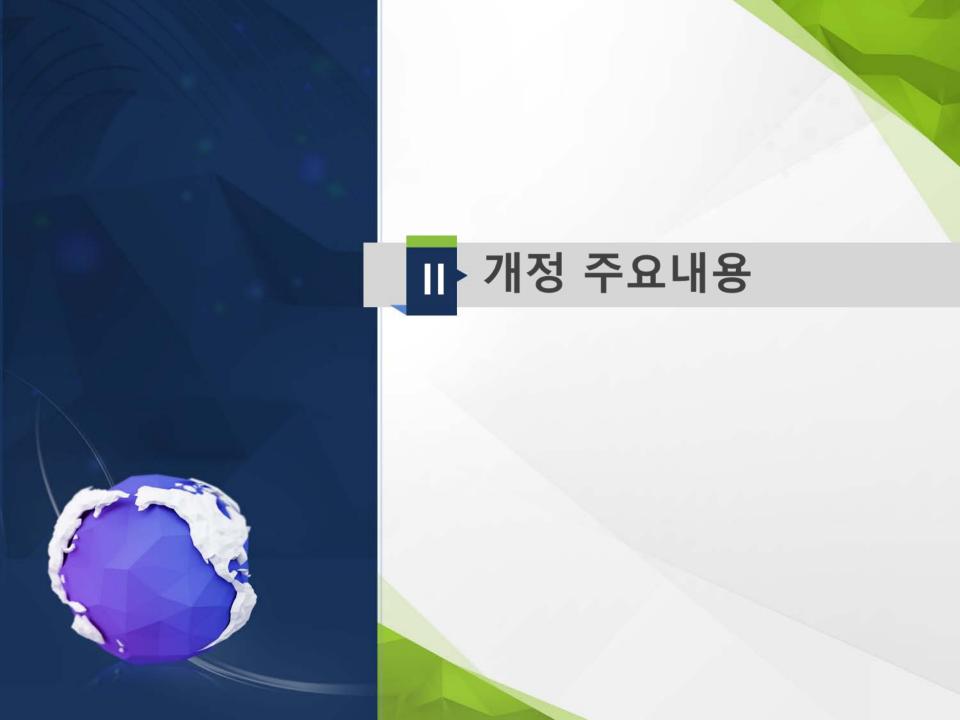
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를 위한 위치법 개정

- ◆ 사물인터넷, 클라우드 컴퓨팅 등 ICT 기술발전에 따라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
- 현행 위치정보법 체계는 2005년 제정된 이후 시장환경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함
-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과의 정합성이 떨어짐
- ⇒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 보호에 부족하고 이용 활성화도 저해

I. 개정 목적

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를 위한 위치법 개정

- ◆ 개정 방향
 - ⇒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및 EU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위치정보법 개선
 - ⇒ 위치정보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



1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

개정 이유

- ◆ 순수하게 사물위치정보만을 수집하는 사업(ex.택배 영업을 위한 드론)도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경우와 동일하게 허가제를 적용
 - ⇒ 신규기업에 대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

- ◆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
- * **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 개념에서 개인위치정보**(휴대폰과 같이 사물위치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위치정보가 되는 경우 포함)를 제외한 개념

2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간주제 신설

개정 이유

- ◆ 신규 위치기반서비스는 스타트업 등의 시장 진출이 많고 사업경쟁력 및 수익성이 불투명
- ◆ 현행 신고제로 인해 사업자들이 각종 법률·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신고 수리시까지 서비스 출시가 지연
- ⇒ 시장현실을 반영하여 서비스 출시·폐지에 대해 유연한 접근 필요

개정 내용

◆ 1인 창조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호·소재지 등 일정 사항을 방통위에 보고하면 별도 절차없이 신고사업자로 간주하는 신고 간주제 신설

3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동의제도 합리화

개정 이유

- ◆ 현행 위치정보법은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요구하고 있고,
 - 현실적으로도 소유자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 발생

- ◆ 사물위치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할 경우
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
 - ※ 소유자 동의없이 수집·이용·제공하는 경우에도 처리정지요구권 보장

4 개인위치정보 사전동의 예외 추가

개정 이유

- ◆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현행 위치정보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의 예외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
 - ⇒ 신규 서비스 개발 · 제공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, 동의의 형식화

- ◆ 개인정보보호법과 정합성을 제고하고 EU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,
 - ①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, ②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개인위치정보 수집·이용시 사전동의의 예외로 추가

5 위치정보 처리위탁 규정 신설

개정 이유

- ◆ 클라우드 서버 이용 등 처리위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,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처리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
 - ⇒ 처리위탁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

- ◆ 정보통신망법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
 - ① 처리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, ② 위탁업무의 목적, ③ 수탁자 관리·감독 및 교육의무, ④손해배상책임, ⑤재위탁 근거 등 신설

6 국외이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

개정 이유

◆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등으로 국외이전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,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국외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

- ◆ 정보통신망법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
 - ①국외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, ②제3국으로의 재이전에 대한 규제 근거,
 - ③국외이전시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 의무, ④국외이전 중단 명령권 등 신설

7 손해배상제도 강화

개정 이유

- ◆ 현행 위치정보법은 손해배상시 피해자가 피해 및 피해액을 입증하도록 규정
- ⇒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 절차가 번거로우며 배상액도 낮아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낮음

- ◆ 정보통신망법·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
- 고의·중과실에 대해서는 가중된 책임을 물어 배상액을 확대(징벌적 손해배상제)
- 구체적 피해액의 입증 없이도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(법정 손해배상제) 도입

8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 신설

개정 이유

◆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현행 위치정보법은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이 없어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가 곤란

- ◆ 시정조치 명령(위반행위의 중지,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등) 신설
- ◆ 과징금(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/100 이하) 근거 신설



Ⅲ. 향후 계획

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를 위한 위치법 개정

◆ 현재 진행상황

- 개정안 위원회 보고 : 16년 9월 21일
- 입법예고 : 16년 9월 23일~11월 2일

◆ 향후 진행방향

- 위원회 의결: 16년 11월말
- 차관회의,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제출 : 16년 12월말

감사합니다

